

자 제 종 목	기 안 처	계 획 과 신 의 원	전 화 번 호 361	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
구 담 임	계 획 과 장	도시 계획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관 계 지 명 조 안 일 월	9.25.58	9.26.	9.26	
분 류 호	415	전 체 통 제	종 결	정 서 기 장
경 수 참 유 신 조	내 부 결 재	발 신		
계 목	도로 계획 및 도로 확 장 (도로 회 환)			
<p>건설부고시 제 1016호 (64. 8. 6) 제 4항의 추정에 의하여 다음 각안과 같이 시행코자 결 재를 바랍니다</p>				
<p>안 1.</p> <p>서울특별시공시 제 859호</p> <p>都市計画法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都市計劃을 決定하였기 이에 告示한다 (附係圖 面은 서울特別市都市計劃局計劃課 및 永登浦區建設課 에 備置하여 附係人의 縦覽에 供한다)</p> <p>1964. 10. 10 서울特別市 尹致暎</p>				

56449

167

10 10 188 648

区分	種類	路線名	路線 番号	起 点	終 点	重 要 程度	種 別	停止理由	備考
府外道路				永登浦西2区 第581の1号	永登浦西2区 第581の2号			道路幅員 不足	(60坪)
府内道路				永登浦西2区 第581の1号	永登浦西2区 第581の1号			道路幅員 不足	4坪 (90坪5545)

"제2안"

수신	영등포구청	발신	시장
제 목	프레드 및 확장도로 교환 (조건부폐로)		

지구관내 영등포동 581의 1 부근 도로를 폐지
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부분을 교환하였기 별첨 공고문
사본 및 도면을 송부하니 지구에 비치된 도면을 정리하고
지구계시판 및 완활동계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의 종
람에 응하고 사무처에 차질 없도록 각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유청. 도시부사본 및 도면각 1부 끝

"제3안"

수신	시내영등포동 580의 1 송신	발신	시장
제 목	프레드 및 확장도로 교환 통보 (조건부폐로)		

기하가 제출한 도로를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
저축부분과 교환고지 함에 대하여는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도로양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속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183 특별시

"안 5"

수신	건설부 장관	발신	시 광
참조	총무국장		
제목	로선제지 및 교환 재산목록 제출		

1. 도시계획법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로선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2. 재산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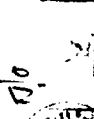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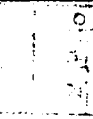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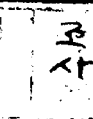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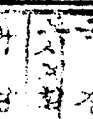







구분	기 점	공 점	면적 (약)	면적	특이사항	비고
확장도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581의 95	영등포구 영등포동 581의 105	52M	약 60평	공용계지성역 이므로 계획하고 확장저촉	
계획도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581의 10	58	42	약 90평	부분교환	

신청 주체 > - - -

배도현장조사서

조사내역

64. 7. 16.

1) 신청인 주소성명	시내 영등포구 영등포동 580의 4 종 鍾 鍾
2) 신청 장소	시내 영등포구 영등포동 581의 4 580의 8 구간
3) 신청 면적	90 평
4) 용 도	건축대지
5) 인접 지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양측대지가 신청인 소유지 이므로 인접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
6) 주민동행상 지장 여부	특행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인접주민의 동의 여부	동의가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9/17
8) 차량의 주차 및 우회지장 여부	없음 (영등포 ~ 수천간 간선로변보다 2~3M 높우 지대임)
9) 점용허가 여부 및 설치사용관계	64. 12. 31 까지 점용허가 되었음
10) 조사자의 의견	신청인대지가 영등포 ~ 수천간 25M 계획도로에 건축되어 있으며 영등포동 581의 4 580의 8 구간으로는 사실상 공용불능 (사실상 폐포상태) 계획지 아래이며 건축권 부분신청인 대지와 도로부지를 상호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하여도 가하라고 사료됨
11) 조사자 작성명	지방토목기사보 신 

199

111

192

陳 書

仁川特別市永登浦區永登浦洞 5-80의 8
5-81의 4 사이
의 舊道路를 廢止 하는 同時에 後日都市計劃의
確定된 時는 本人 所有인 上記 5-81의 4 地
에 接하는 部分을 評價 하여 地價 引上 何等
의 議 案이 有하든 否든 提出 하나이다

1964 年 9 月 日

仁川特別市永登浦區永登浦洞 5-80의 8
5-81의 4

地 所 有 者

李 鍾 聲

仁川特別市長 書下

172.

성 동 포 구

서영건설 416-10583 (6.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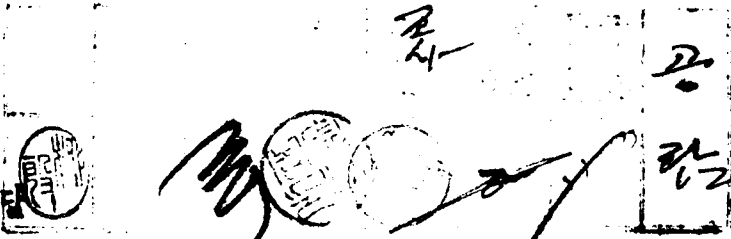
1964. 9. 14.

경유 시정 파장

수신 서울특별시장 귀하

참조 ~~김정환~~

제목 토모폐지허가 신청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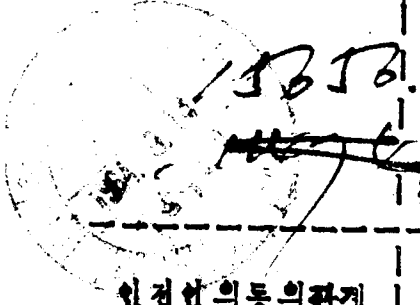


토모폐지허가
신청진달

당구 성동포동 580 번지 4호 이 종성 으로 부터 토모 폐지허가신청이
있어 조사검토하고 별지 관계서류를 진달하나이다

조사사항	검토결과
신청장소	1. 성동포구 성동포동 581의 4호 대저내에있는 구도모
신청면적	1. 90평5합5차
신청목적	1. 주택용 폐지로 사용
신청지취의원고관계	1. 1964. 12. 31 까지 당구에서 집유타가름 독하였을 2. 신청지의 양면대지가 1963. 12. 14자로 신청인 소유 토통기가 되어있을 3. 1957. 8월경 인주하여 현재 까지 거주하고있을
인접한의동의관계	1. 본인소유지내에있고 용도가 아내므로 동의 필요 없을
분재유무	1. 있을

허가여부에대한 의견 1. 신청도모는 의정 예로 폐모상태로되어 주택이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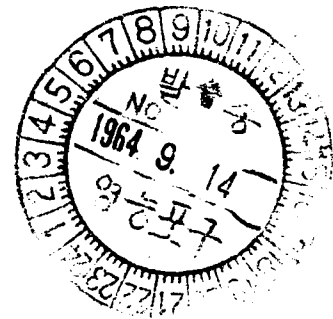
173

1964년 9월 14일 도시계획국서무 No. 969

1964. 9. 14. 18-1625

기타 참고 사항	<p>되어있고 폐포하여도 무방하다코 사모됨</p> <p>1. 신청지는 1940년도(왜정시) 정성부출으로부터 이사형으로 취득하여 등록조합 도포사용허가됨 영등포 금융조합 사례를 본도로 부지의 일부와 580의 8호 581의 4호 대지내에건 축하여 현재에 지하였음</p>
----------	---

유필 신청서 2부



영 등 포 구 청 장

정 분

174

도로폐지허가신청서

1. 위치 및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5-81번지 4호 京水逆路
2. 폭원 및 연장
3. 폐도코자 하는 면적 90㎡ 5-5 5-7
4. 목 적 住宅用空地
5. 사 유 本旧逆路는 약 40년 전 부터 京水逆路가 새로 생기
以來 폭원이 폐도 되어 있는 것은 1940년 6월 15日前
金融組合이 당시 京城府手으로 부터 住宅地 使用
許可를 얻어 住宅(職設舍)을 新築하여 使用하고
있던 것을 본인이 買受하여 居住하고 있어 이 폐도
도 許可 받으려 합니다

위와 같이 폐도코자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4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5-80번지 4호



신청인 성명

송 권 규 (Seong Gun-gyu)
⑥ 3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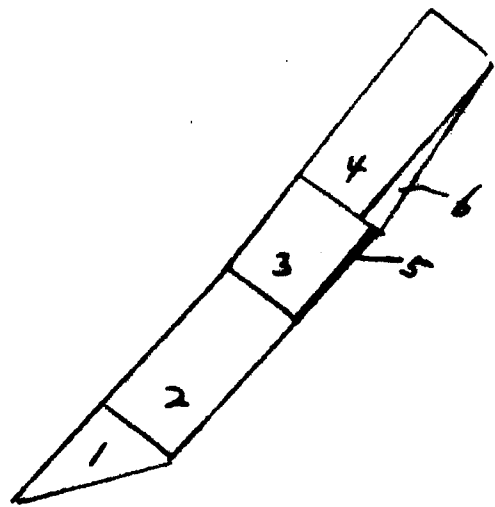
청 장 귀하

1. 취급하는 곳	구청 건설과
2. 갖추어야 할 서류	① 소유권등기부 등본 ② 인접지 동의서 ③ 실측도면 ④ 시세환납증명서
3. 수수료	없음
4. 어떻게 처리되나	접수 → 재원 → 현지조사 → 계장 → 과장 → 구청장 → 전방

175

付号特别市永登浦区永登湖洞社合修路工程旧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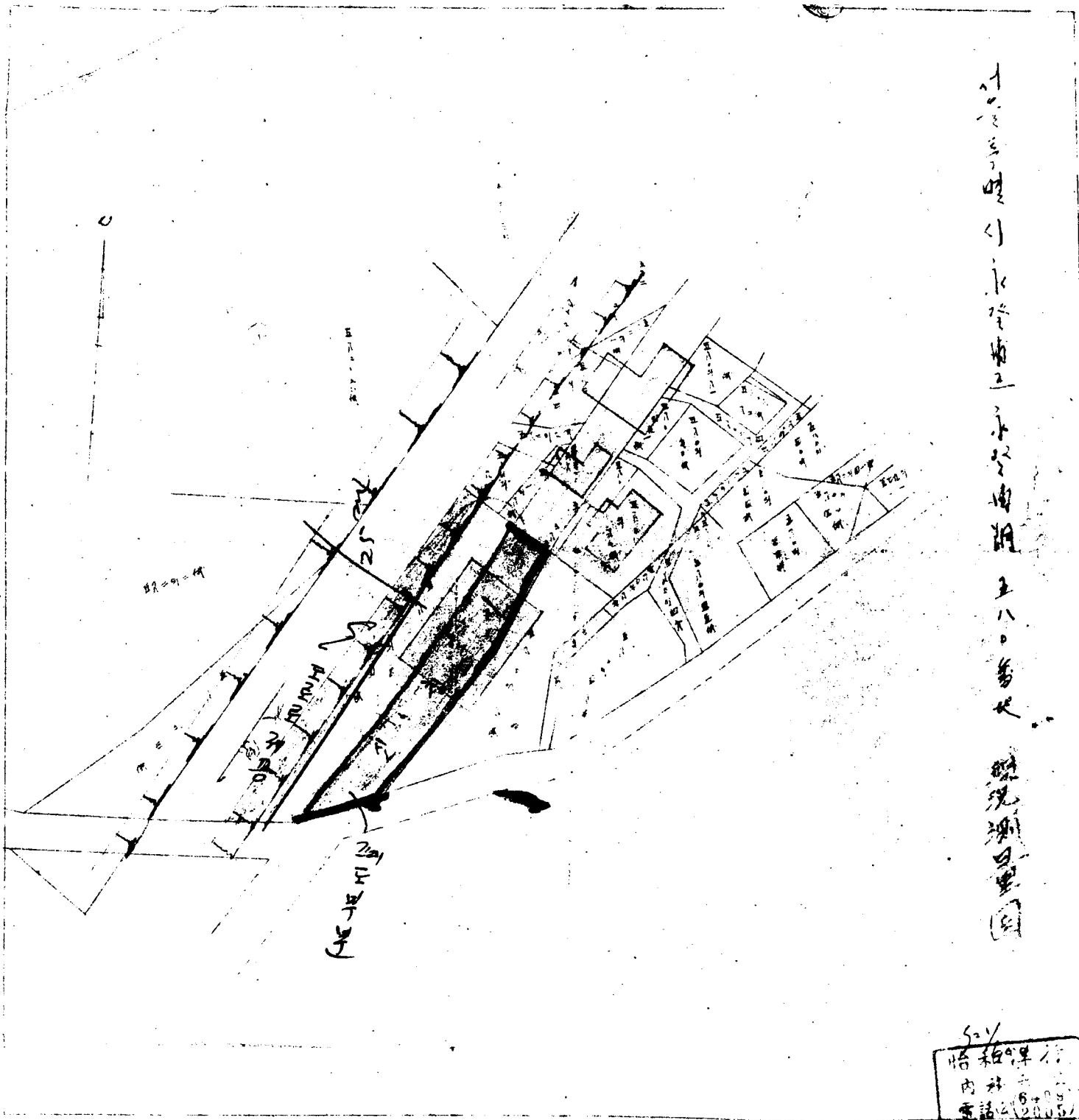
求 籍 圖 九 卷 坪 五 合 五 寸



- 1. $37 \times 5.8 \div 2 = 107.3$
 - 2. $3.6 \times 7.8 \div 2 = 28.08$
 - 3. $26 \times 6.0 \div 2 = 21.60$
 - 4. $33 \times 2.8 \div 2 = 24.74$
 - 5. $0.4 \times 6.0 \div 2 = 1.20$
 - 6. $98 \times 8.0 \div 2 = 320$
-
- 90.55

17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524
怡和洋行
內科
電話 (6-88)
(2005)

(權外權所)
(利外以有)

區



此謄本은登記簿에依하여이를作成하고
茲에登記簿와相違없음을認證함

西紀壹九六年

22⁵月

日
議事會
議事會
議事會

서울民事法院 永登浦登記所



| 乙 | | (權有所) 區 | |
|-----|---|---------|-----|
| 番號位 | 事項欄 | 番號位 | 事項欄 |
| | <p> 此項土地係由前手所有
 於民國八十四年八月
 間向本區地政事務所
 申請辦理移轉登記
 手續業經核准在案
 所有權人
 以下空白 </p> | | |
| 番號位 | 事項欄 | 番號位 | 事項欄 |
| | | | |
| 番號位 | 事項欄 | 番號位 | 事項欄 |
| | | | |

202

180

203

(權外權所)
(利對以有)

區

中華民國政府 (R.O.C.)



205

18/

204

此謄本은登記簿에依하여이를作成하고
茲에登記簿와相違없음을認證함

西紀壹九六年

225
月

日

議事會
二部
分
官
署
印

서울民事地方法院 永登浦登記所



此謄本은登記簿에依하여이를作成하고
茲에登記簿와相違없음을認證함

西紀壹九六年

月

日

1965.12.25
日 韓米... 抹消... 係...
1965.12.25

서울民事地方裁判院

書記官

安淳基



(權外權所)
(利與以有)

區

土地所有權人姓名 (戶名)

212

213

85

此謄本은登記簿에依하여이를作成하고
茲에登記簿와相違없음을認證함

西紀壹九六年 月 日

1963.12.23

서울民事地方法院

書記官

安彦樓



시 서미과세 증명서

주소 또는
거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50가
영입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상호 또는
업 종:

성 명: 홍 금 생

유치하려는 시는 시가 1964년 7월 1일 현재도 과세 금액이
없음을 증명함.

(유효기간 30 일간)

시가 1964년 7월 1일

| | | | | | |
|--------|---|---|---|---|-------------|
| 정
유 | 제 | 년 | 월 | 일 | 구
청
장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50가

未課稅證明願

永登浦 稅務署長 貴下

No. _____

住所(或居所)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永登浦洞 街 580番地외4

營業場所

商號

姓名 李 堯 壽

營業種目

證明書의使用目的 道路 遷道申請

證明書의所製數量 2冊

國稅 徵收法 施行令 第十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給하는날 現在 課稅實績이 없
음을 證明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西紀一九六〇年 九月 日

申請者 李 堯 壽

223

表記事實을 確認한바 相違없음을

證明함

西紀一九六〇年 九月 日

永登浦 稅務署長

각무대리 박 기

이證明書 有効期間은 1960年 10月 日까지임

備 考

有効期間의計算方法은發給한날의翌日부터計算하여
30日째되는 날의 밤12時까지임

건축대지증명원

| | |
|-------|---|
| 건축지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 동가 587 번지 4 호 |
| 건축주소 | 서울특별시 구 영등포 동가 번지 호 |
| 건축주성명 | 이종성 목적 복용(주) |
| 수수료 | 1필 / 0 리 필 수 1 필 합계금 10 원정 |

위 건축지와 시가지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건축물 배치도 공작물 위치도 첨부신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 **6** 년 **3** 월 **5** 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 동가 **587**번지 **4**호
 신청자 성명 **이종성**
 구청장 귀하

본지는 별지건축지 배치도 공작물 위치도의 범위에서 시가지 계획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1. 서가지계획 도로에 저축 **목원** (저축상태는 별도 대요기입함)
2. 도로관리청 계획 도로에 저축 **목원** (저축상태는 별도 대요기입함)
3. 시가지계획 공원지에 저축 (저축상태는 별도 대요기입함)
4. 서가지계획 풍차자구에 저축 (저축상태는 별도 대요기입함)
5. 서가지계획 준치보안람에 저축 (저축상태는 별도 대요기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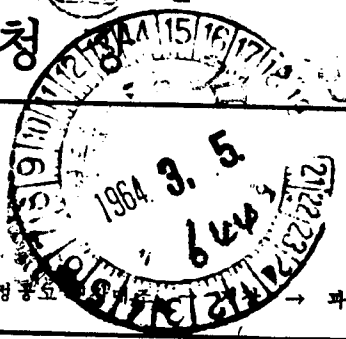


목원 **목원4미터** 상의 도로에 접함
건축은 인정도로에 접함 (목원 **6** M)
건축은 **현장필수** **건축**의 **유합** (1시간처리 M)
건축은 **사도**에 접함 (한국사도규칙에 의하여 축조허가를 받았음)

11. 시가지계획 **1:1** 지역인 **본** 신청지는 **기** (소로제외) 및 **경**에 대한 계획과는 **되**의 **이**에 **위**와 **같이** 증명함 **대**한 **확**정 **시**가 **되**기 **까**지는 **도**시 **세**획 **확**정 **사**함은 **무**정임
 서기 196 **6** 년 **3** 월 **5**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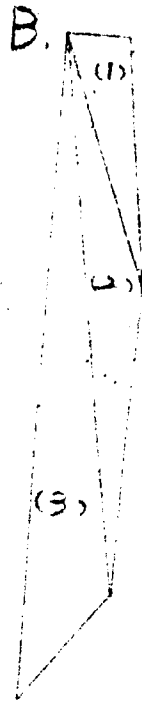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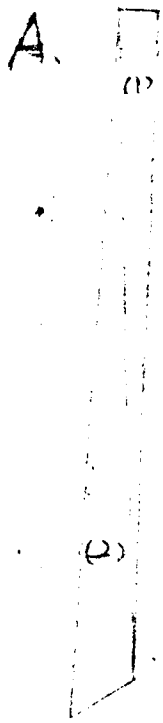
구 청

| | | |
|------------------|-----|----------------------------|
| 1. 취급하는 곳..... | 구청 | 건설과 |
| 2. 갖추어할 서류..... | 지적도 | |
| 3. 수수료..... | 1필 | 10원 |
| 4. 어떻게 처리되나..... | 접수 | → 계원 → 도시계획 확정공도 → 과장 → 발급 |



192

구 적 구



A 구 적 구

$$(1) \frac{1.2 \times 3.2}{2} = 1.92 \text{ 평}$$

$$(2) \frac{1.1 \times 1}{2} = 0.55 \text{ 평}$$

$$(3) \frac{1.2 \times 1}{2} = 0.6 \text{ 평}$$

$$\text{(합계)} \quad \underline{3.07 \text{ 평}}$$

B 구 적 구

$$(1) \frac{2.1 \times 4.1}{2} = 4.305 \text{ 평}$$

$$(2) \frac{4.4 \times 4.3}{2} = 9.506 \text{ 평}$$

$$(3) \frac{4.1 \times 1}{2} = 2.05 \text{ 평}$$

$$\text{(합계)} \quad \underline{15.861 \text{ 평}}$$